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490
----------	-------

발의연월일 : 2024. 2. 2.

발 의 자 : 김승수 · 지성호 · 김은희
박대수 · 김영식 · 박덕흠
이 용 · 황보승희 · 김석기
주호영 · 김성원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하 “정가”라 함)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행물에 표시하여야 하며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웹툰, 웹소설 등 신생 웹 콘텐츠 산업의 경우 전통적 간행물과는 생산 및 유통구조의 차이가 존재하는 바, 산업 특성상 작품 생산 및 소비 주기가 짧아 지속적인 노출을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 허용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왔음.

이에 웹툰과 달리 정의 규정이 없어 산업 진흥에 어려움이 있는 웹소설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웹툰과 웹소설에 대해서는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여 다양한 방식의 마케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해당 산업을 진흥하고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시키고자 하며, 또한 산업 내 출혈 경쟁 등으로 해당 산업군의 유통사가 저자 및 출판사에 그 비용을 전가시킬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판매 촉진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가격 할인에 따른 비용 등을 합의 없이 저자 또는 출판사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창작자를 보호하고 산업 내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2조제10호, 제22조제7항제6호, 제23조제1항제4호 신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웹소설”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에서 제작된 소설을 말한다.

제22조제7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웹소설 및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웹툰

제23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웹소설 및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웹툰의 유통사가 판매촉진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 등을 합의없이 저자 또는 출판사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9.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9. (현행과 같음) <u>10. “웹소설”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에서 제작된 소설을 말한다.</u>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① ~ ⑥ (생 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 ~ 5. (생 략) <u><신 설></u> ⑧ (생 략)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 ----. 2. ~ 5. (현행과 같음) <u>6. 웹소설 및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웹툰</u> ⑧ (현행과 같음)
제23조(간행물의 유통질서) ① 간행물의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간행물의 저자, 출판 및 유통에 관련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제23조(간행물의 유통질서) ① -- ----- ----- ----- -----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u><신설></u> ② ~ ④ (생략)	-----. 1. ~ 3. (현행과 같음) 4. <u>웹소설 및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웹툰의 유통사가 판매촉진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 등을 합의없이 저자 또는 출판사에게 부담시키는 행위</u> ② ~ ④ (현행과 같음)
---	--